

반면 동법 제5조 제2항에서,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규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의 성격이 짙은 법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상충되는 법익의 조화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 Ⅲ 언론에 의한 ‘피해’ 사례와 취재 관행

#### 1. 언론에 의한 ‘피해’ 주장 사례

##### 〈사례 1〉 인격권 침해 및 손해배상

신청인의 조정신청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경찰의 짜맞춘 조작증거에 의해, 변사한 막내 동생을 살인한 혐의로 2003년 8월 27일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다.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 긴급체포되면서 진실을 조작, 호도, 왜곡했다. ▲이에 신청인은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A언론사는 피의자 신분이 된 신청인을 직접 만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신청인 가족 등에 대해 취재하지도 않은 채 「빛독촉 동생 살해, 손가락 잘라 유기, 카드빚 40대·피해자 숨겨려」의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고 가족들의 고통이 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A신문 등의 보도기사 사본과 함께 1심에서 대법원 재판까지의 ‘무죄’ 선고 재판기록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조정심리과정에서 보면 피신청인은 ① 1심판결 결과 무죄선고사실은 보도한 적이 있으나 대법원 판결 결과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당시 담당기자가 휴가중이어서 충분한 취재를 하지 못했으며 ③ 신청인이 원한다면 추후보도를 성의껏 해줄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위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피신청인 즉 언론사의 취재 및 제작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이 사건이 지니는 엽기성과 함께 사회에 준 엄청난 충격에 비추어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의 추적 그리고 추후 보도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항소심까지도 무죄선고를 받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되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사건진행의 추적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상당 수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우 추후보도는 때로는 다시 한번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당시의 고통을 떠올리게 할 소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은 추후보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피해구제신청 이전에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이다.

둘째로 피신청인은 당시 지방주재 담당기자가 휴가중이어서 충분한 취재를 못했다고 하고 있다. '빛 때문에 동생을 살해한' 엄청난 성격의 살인사건인만큼 다른 기사를 파견할 수도 있고 또 경찰수사발표만을 그대로 믿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만나거나 가족 등 정황을 두루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언론의 취재속성상 마감시간에 쫓기고 타 매체와의 속도경쟁 등을 해야 하는 측면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언론사의 입장이나 관행이 사건의 정상 참작은 될지언정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의 취재, 제작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관행이 때로는 언론사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 중재부의 조정·조화 노력 등으로 쌍방 합의에 의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으로 결말이 지어졌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조정심리결과 합의에 이른 손해배상규모가 신청인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주었는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현장 확인 등의 소홀로 발생하는 잘못된 보도와 이에 따른 반론·정정보도신청 이행 사례가 많아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발한다면 무엇보다도 해당 언론사는 물론 전체 언론의 사회적 신인도가 떨어져 보다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언론은 사회를 바라보는 창이요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반영한다.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여론형성의 마당이요 집산지이기도 하다.

## 〈사례 2〉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신청인의 조정신청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명의 괴한들에게 아파트 입구에서 납치되어 성폭행 및 금품갈취를 당한 피해자이다. B언론사는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CCTV 화면에 비친 신청인의 모습을 그대로 방영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CCTV 화면을 사전에 신청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보도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어떠한 화면 보호 처리도 없이 보도하여 이미 사건으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은 상태의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B방송사의 보도기사 전문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조정심리과정에서 보면 피신청인은 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CCTV 화면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송사가 이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본사 편집요원들도 CCTV의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하여 보도에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며 ② 신청인이 당한 범행 내용을 자세히 밝히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고, 이를 두고 단순 성추행이라고 보도하기도 곤란하여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성폭행’이라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위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피신청인 즉 언론사의 취재 및 제작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피신청인은 CCTV 화면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편집요원들의 견해도 동일하여 그대로 보도했다고 하고 있다. CCTV 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으나 피해자임을 추측할 수 있는 특징 등이 드러나며,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 등이 여과 없이 드러나 같은 동네 주민이나 친척 등 주변 인물들은 알아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어떠한 화면보호처리도 없이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의 신변보호나 인격권보호 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이는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상당 수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자료 화면의 보도는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보도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성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보도 과정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 성폭행이란 개념은 법률적으로는 기수와 미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미수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므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성폭행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당한다는 점이다. 성폭행으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보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

언론사의 취재속성이나 기자들의 과도한 업무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언론사의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 중재부의 조정·조화 노력 등으로 쌍방 합의에 의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으로 결말이 지어졌다.

언론의 잘못된 취재관행이 인권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 언론사는 보도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사례 3〉 명예훼손 및 반론보도

신청인의 조정신청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C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기사에서「고속도 판매 ‘경주뽕’은 가짜」등의 제목으로 신청인은 타인의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경주뽕〉의 명칭과 동일한 〈경주뽕〉 명칭을 사용, 신청인이 제조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함으로써 타인 상표권을 침해하고 경주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신청인은 ‘경주뽕’이라는 명칭은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그 명칭만으로는 타인의 상표권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자신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C언론사의 보도기사 사본과 함께 10건의 관련서류들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조정심리과정에서 보면 피신청인은 ①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K 통신사의 보도를 전제한 것이고, ② K 통신사 취재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충분히 사실이라고 확신할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피신청인 C 언론사의 제작과정상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언론사들은 K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보도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신청인은 K 통신사 취재기자에게 사실 확인 후 보도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피의자

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K 통신사 취재기자의 말에 의존한 것은 잘못된 취재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점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 중재부의 조정 등으로 쌍방 합의에 의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졌다.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과정의 복잡성과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보면 언론사의 고충도 이해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적 보도가 때로는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언론사는 타사보도를 전제하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 절차에 엄밀성을 기해야 하겠다. 이 보도로 인해 신청인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한 상품의 철거를 요구받고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호소한 바 있다.

#### 〈사례 4〉 명예훼손 및 손해 배상

신청인의 조정신청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일본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해양경찰서에 연행되어 40여 일간 수사를 받았으나 다시 20일 간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신청인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경찰발 표만을 믿고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 당시 신청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D언론사는 피의자 신분이 된 신청인을 직접 만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본산 고등어 국내산 둔갑 시중 유통」의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고 납품회사로부터 납품거절을 받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D언론사의 보도기사 사본과 함께 무혐의 사건처분 결과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 조정심리과정에서 보면 피신청인은 ① 경찰의 공식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고, 경찰이 직접 제작한 영상자료까지 있었으므로 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일본산 고등어를 공급한 공급업자의 인터뷰까지 보도하는 등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했음을 밝혔다.

위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우선 피신청인 즉 D 언론사가 경찰의 공식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도에서 신청인의 상표가 그대로 방송되어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언론이 지켜야 할 취재윤리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둘째로 피신청인은 일본산 고등어를 공급한 공급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확인을 위해 공급업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보도대상이었던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경찰수사발표만을 그대로 믿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만나거나 정황을 두루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 사건의 경우는 중재부의 조정 등이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언론의 부주의한 보도로 인해 언론 스스로는 물론이고 피해 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수반하는 법적 공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언론 취재윤리와 보도 엄정성의 중요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 취재 관행

취재와 보도를 주 임무로 하는 언론조직은 여타 일반 조직과는 달리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뉴스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는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해진 마감시간 내에 이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예상외의, 그리고 무한정의 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 사건들 중에서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내어 분류하고 유목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작업을 관행화시켜야 하며 특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취재 조직은 더욱 많은 독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와 아울러, 좀 더 저렴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행들을 선호한다.<sup>2)</sup>

관행이란 언론인들이 일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형식화되고 일상적이며 반복되는 일과 행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형성된 관행은 기자 개인이 일을 수행하는 도중에, 그리고 일의 수행을 통해 즉각적인 주변 환경을 형성한다. 조직은 이런 관행을 통해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조직적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Shoemaker & Reese, 1996).

뉴스가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기사화 방식, 나아가 정보를 얻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제반 과정에 나름의 관행들을 발달시킨다. 물론 이들 관행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조직

---

2) Shoemaker & Reese, 1996; Turow, 1992; Tuchman, 1973

이 당면하는 물리적 제약들에 잘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다(김동규·김경호, 2005).

이렇듯 일상화된 취재 관행은 내외적 여건 등으로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김민남, 1998). 언론조직과 종사자들의 필요성에 부합해서 생긴 실질적인 것이지만 한편으로 언론 행위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츠와 그 동료(Bantz, et al.)들은 이러한 관행들이 고도화된 언론조직일수록 융통성이 결여되어 최종 결과물에 대한 기자의 개인적인 참여와 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러한 조직 환경 아래서는 기자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보다 제한된 시간 내에 맡은 바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 저널리스트의 직업적 가치가 장려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1981).

취재 관행은 언론사의 물리적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언론보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달한 것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의 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사실 미확인 보도이다. 기자들은 사실 확인이 덜 필요한, 공신력 있는 취재원 특히 조직화된 취재원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시간적 공간적 재정적 제약을 받는 기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취재원을 선택하고 사실 확인이 덜 필요한 공신력 있는 조직화된 취재원을 선호한다(장호순·오수정, 2001). 언론에 의한 피해 주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신력 있는 취재원인 경찰, 검찰이나 행정관서 등의 발표에 의존하여, 사실 확인 및 현장 접근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 언론은 비교적 취재원의 관변 의존적 성향이 여전히 크다고 하겠다.

둘째, 조직론의 관점에서 볼 때 신문사들의 취재 조직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상호의존적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은 기자들이 뉴스를 패거리(pack)로 취재하는 관행을 만들어낸다(김동규 2004). 특히, 뉴스대상을 평가할 수 있는 확고한 외적 기준이 없는 경우, 독자적인 취재보다는 패거리 보도를 선택하고 다른 경쟁기자들의 선택에 따르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의존 관행은 보도의 유사성과 획일성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례 3>에서 알 수 있듯이 취재 대상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현장 확인을 생략한 채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전재하는 관행에 의존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하겠다.